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검 토 보 고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705호)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776호)

2026. 10.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택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32
1. 발의배경	32
2. 결의안별 검토	35

I. 제안경위

구 분	발 의 자	발의연월일	회부연월일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의원 등 105인	2026. 9. 30.	2026. 10. 1.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의원 외 160인	2026. 10. 2.	2026. 10. 6.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26년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작전에 투입된 우리 군 장병 18명 전원이 후송되고, 그중 1명이 발목을 잃는 등 다수가 부상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상 장병과 그 가족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뜻을 전한다.

국회는 우리 군이 2025년 9월 북한군의 MDL 인근 지뢰 매설 흔적을 이미 식별하였고, 유엔군사령부가 2026년 6월 23일자 팩트시트를 통하여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방어적 행위로 볼 수 없는 자동적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정부가 1년이 지나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사와 실효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병들을 위험지역 작전에 투입한 점을 국가안보 체계의 중대한 실패로 규정한다.

아울러 국회는 사건 발생 후 6일이 지나서야 현장조사가 개시되어 증거 멸실이 현실화되고,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에 관한 판단이 유보된 채 사실관계가 선별적으로 공개되어 온 데 대하여 이를 축소·은폐 의혹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장.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정부는 부상 장병 전원에 대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치료·재활·보상·예우의 전 과정에서 장병과 가족이 어떠한 절차적 부담도 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국회는 합동참모본부가 2026년 9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통하여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음을 확인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이번

피해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한 적대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회는 매설 주체 규명의 지연이 장병의 전상 처리와 예우를 지연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판정 확정 전이라도 치료와 지원은 선(先)조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3. 정부는 사고 당일 후송된 장병 18명 전원에 대하여 부상 정도와 무관하게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른 상이 구분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상이가 확인되는 장병은 퇴원자를 포함하여 모두 전상자로 분류한다. 국회는 이번 사고가 작전 중 적의 행위로 인한 피해인 이상 부상의 경중에 따라 분류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작전 병력 18명 전원이 후송되었음에도 부상자를 3명으로, 이후 다시 2명으로 발표한 경위를 정부는 명백히 밝혀야 하며, 발표상의 인원 조정이 실제 처우의 축소로 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정부는 부상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과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를 즉시 제공하고, 1차 폭발 후 전우를 구조하기 위하여 현장에 진입하였다가 2차 폭발로 피해를 입은 장병을 포함하여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작전 참여 장병 전원에 대하여도 심리 평가와 치료를 시행한다.

5. 정부는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를 존중하여 계속 복무의 길을 보장하고, 전역을 선택하는 경우 보훈 등록·재활·취업 및 생활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도록 한다.

6. 정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군인 단체보험금이 지연 없이 지급되도록 하고, 보훈 심사 과정에서 장병이 스스로 피해 원인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아니하도록 국가가 입증 책임을 다한다. 국회는 과거 목함지뢰 피해 장병의 상이 판정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논란이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7. 정부는 부상 장병의 상해 정도, 수술 부위, 치료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국회에 보고하고, 치료 상황에 관한 정보 통제가 사건 축소·은폐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8.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상 장병과 그 가족,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고,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진상규명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

9. 국회는 피해 장병의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제2장. 증거보전 및 자료 훼손 금지

10. 정부는 9월 27일 실시된 현장조사의 접근 범위와 채증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완료된 조사 구역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조사 일정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11. 정부는 강우로 인한 현장 훼손 상태를 사진·영상 및 계측 자료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사건 발생일부터 현장조사 개시일까지의 기상 기록과 현장 보전 조치 내역을 제출한다.

12. 정부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생성된 모든 자료, 즉 작전 인원의 바디캠 영상 원본, 현장 사진, 감시장비(CCTV·TOD 등) 및 무인기 영상, 위성영상 판독자료, 각급 제대 지휘통제실 상황일지, 상황보고 문건과 그 기안문 초안, 유엔군사령부와의 왕복 공문, 지휘계통 간 지시·보고 기록의 폐기·삭제·편집·재분류를 전면 중지한다. 아울러 본 결의안 발의 시점 이전에 이들 자료를 폐기·삭제·편집·재분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부는 그 대상과 시기, 지시 주체 및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기록을 원상복구한다.

국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형법상 공용서류 손상 및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가. 본 결의안 발의 시점 이후 이들 자료의 훼손·멸실·선별 편집이 확인되는 경우

나. 발의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폐기·삭제·편집·재분류에 대하여 정부가 보고 및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정부는 유엔군사령부가 요청한 임무수행 영상을 일부만 발췌하거나 편집하여 제공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제공한 영상의 원본 대비 편집 여부와 편집 결정의 주체를 밝힌다.

14. 정부는 본 사건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는 진상규명 완료 전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봉인되는 경우 이를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조직적 은폐로 간주한다.

15. 정부는 회수된 폭발물 파편 및 잔해 일체의 목록과 보관 현황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차 감정을 실시한다.

16. 정부는 사고 발생 전후 제25사단 등 관련 부대에서 이루어진 휴대전화 사용 통제, 소셜미디어 게시 금지, 함구령 등 보안 통제 조치의 근거와 범위를 밝히고, 해당 조치가 사고 경위에 관한 증언과 기록의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국회는 장병에 대한 과도한 함구 지시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3장. 2025년 9월 지뢰 매설 식별 이후의 조치 및 유엔군사령부 협의 경과 규명

국회는 우리 군이 2025년 9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하여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지형 변화를 최초로 식별하였고, 유엔군사령부가 2026년 6월 23일자 팩트시트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첫 번째 의심 지점은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의심 지점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유엔사가 잔여 지점에 대한 접근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방어적 행위로 볼 수 없어 자동적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고 확인 시 즉시 위반 대응 절차가 개시된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유엔사의 조사 절차가 한국군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조를 통한 현장 접근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며, 최초 식별로부터 사고 발생까지 1년이 경과하는 동안 군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7. 정부는 2025년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최초로 식별한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1년 동안 시행한 조치의 전모를 시간순으로 밝힌다. 추가 매설 차단을 위한 조치, 현장 확인 및 지뢰 제거 검토, 해당 구역에 대한 위험 고지와 출입 통제, 작전 지침의 변경 여부를 포함하며, 시행한 조치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18. 정부는 2025년 9월 최초 식별 사실이 지휘계통상 어느 선까지, 언제 보고되었는지를 밝힌다. 제25사단, 제1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장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대한 보고 여부와 일자를 각각 포함하며, 보고되지 아니한 단계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함께 밝힌다.

19. 정부는 2025년 9월 이후 북한군의 지뢰 매설 구역이 확대되었는지, 확대되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위성영상 판독 결과에 근거하여 밝힌다. 국회는 군이 위성영상을 통하여 최초 식별을 하고도 그 후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감시·분석 체계의 중대한 공백임을 지적한다.

20. 정부는 최초 식별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진행한 협의의 전 경과를 밝힌다. 협의 개시 시점, 회수와 일자, 각 회차의 논의 내용과 결론, 현장 조사가 2026년 9월에 이르러서야 추진된 사유를 포함한다. 국회는 1년에 걸친 협의회가 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였는지를 이 사건

의 핵심 쟁점으로 본다.

21. 정부는 6월 23일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잔여 의심 지점에 대한 현장 접근을 요청하였는지, 요청하였다면 우리 측이 이를 승인하였는지,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주체와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힌다. 국회는 유엔사의 조사가 지연된 원인이 우리 측의 비협조에 있었는지 여부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본다.

22.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9월 21일 및 22일 등 유엔군사령부가 제기한 현장조사 요구의 접수 내역, 해당 내용이 국방부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도달한 체계와 시각, 그리고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그 사유를 밝힌다. 국회는 이 결정이 이번 사건 증거 멸실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규명 대상으로 삼는다.

23.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이번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 여부 판정 대상으로 공식 회부하고, 군사정전위원회 차원의 특별조사 실시를 요청한다. 조사 결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이 확인되는 경우 팩트시트에 명시된 위반 대응 절차가 즉시 개시되도록 한다.

24.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식별된 인위적 지형 변화 지역 전체의 위치·규모·성격을 전수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위험 고지와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한다.

25. 정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비무장지대 요새화 동향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외교적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국회는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26.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 장병에 대한 피해와 군사분계선 침범 문제를 대외 협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미루지 아니한다.

제4장. 2025년 9월 북한지뢰매설 식별 이후 조치 경과 및 '북한(목함) 지뢰 추정' 표현 삭제 의혹 등 자료 제출 요구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요구하며, 정부는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은 국회법 위반임을 명시한다.

27. 2025년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흔적을 최초로 식별한 위성영상 판독 보고서 원본 및 그 이후 작성된 후속 판독 자료

일체. 최초 식별 일자와 판독 주체, 식별된 지형 변화의 위치와 규모를 포함한다.

28. 2025년 9월 최초 식별 사실의 보고 경로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각급 제대 보고 문서 일체. 제25사단, 제1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장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대한 보고 문건과 그 접수 일자를 각각 포함하며, 보고되지 아니한 단계가 있다면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29. 2025년 9월 최초 식별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각급 제대에서 생산된 위험평가서, 작전지침, 해당 구역 위험 고지 및 출입 통제 지시, 지뢰 제거 검토 문서 일체. 해당 문서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30. 2025년 9월 최초 식별 이후 국방부·합동참모본부·지상작전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와 진행한 협의의 회의록, 왕복 공문, 협의 일자별 목록 일체. 협의 결과 합의되거나 보류된 사항과 그 사유를 포함한다.

31.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각급 제대별(제25사단, 제1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일지 일체.

32. 사고 발생 후 각급 제대 참모계선(정보·작전·인사·방첩·군사경찰)에서 상급 부대 참모계선 및 지휘관, 국방부장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보고한 문서 일체. 최초·중간·최종 보고서와 기안문 초안 전체를 포함한다.

33. 위 보고서의 작성 및 결재 과정에서 '북한 (목함) 지뢰 추정'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포함되었다가 삭제 또는 수정된 이력, 이를 지시한 주체(문서 및 구두 지시 기록을 포함한다) 및 변경 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

34. 2026년 6월 23일 유엔군사령부 팩트시트 발행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국방부·합동참모본부·지상작전사령부·제1군단·제25사단이 유엔군사령부와 주고받은 공문서, 협의 기록, 회의록, 그리고 같은 기간 사고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자체 정찰·안전평가 지시 및 결과 보고서.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없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35.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후송된 18명 장병 전원에 대한 의무 후송 일지, 군 의료기관 진단 내용(수술명 및 부위를 포함한다), 조치 내역 및 상급 부대 보고 문서 일체. 부상자 발표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된 경위와 결정권자를 포함한다.

36. 사고 발생 전후 제25사단 등 관련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통제, 소셜미디어 금지, 함구령 등 보안 통제 관련 지시 공문 및 구두 전파 내역 일체.

37.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지뢰 파편 등 유류품·증거물 목록 및 이에 대한 감식·조사 진행 경과 보고서.

38. 9월 21일 및 22일 등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 요구 접수 내역 (공문을 포함한다), 해당 내용의 국방부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보고 체계와 도달 시각, 당시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그 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

39. 9월 27일 실시된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폭발 발생 추정 근접 지역 도달 당시의 세부 상황일지, 현장조사 내역과 근거 자료, 참여 인원의 바디캠 영상 사본 일체 및 향후 추가 현장조사 계획서.

40. 9월 21일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의 바디캠 영상 사본 일체 및 사고 현장 상황이 녹화된 감시 장비(CCTV, TOD 등) 영상물 사본 일체.

41. 폭발 사고 직후 지뢰 파편 등 증거물 훼손 방지 및 현장 보존을

위하여 군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 내역(현장 영상 및 사진 촬영 기록을 포함한다) 일체.

42. 지뢰 폭발 등 우발 사고 대응 매뉴얼 및 현장·증거 보존 관련 매뉴얼 일체, 그리고 이번 사고 당시 해당 매뉴얼의 조항별 실제 이행 여부와 상세 이행 시각 기록 일지.

4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및 후속 감정서 전문, 검출된 성분과 이물질의 분석 방법 및 판정 기준,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의 사진·계측 자료와 북한군 목함지뢰와의 형태 대조 결과, 해당 지역 아군 지뢰 매설 기록 부존재를 확인한 근거 자료 등 폭발물의 종류에 관한 군의 기술적 판단 근거 전부. 지뢰 방호 덧신을 착용한 상태에서 우리 군 M14 대인지뢰에 의하여 발목 절단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군의 공식 견해와 그 실험·교리 근거를 포함한다.

44. 유실 지뢰인지 매설 지뢰인지에 관한 판단 근거 전부. 1차 폭발과 2차 폭발의 발생 지점 간 거리, 시간 간격, 폭발 잔해의 분포도를 포함하며, 연쇄 폭발이 지뢰지대 형성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군의 분석을 명시한다.

45.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이 북한군 목함지뢰를 목격하였다는

증언의 존부와 그 내용, 해당 증언이 상황보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46. 사고 당일 작전명령서, 수색로 설정 경위 문건, 위험지역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전 준비 기록. 해당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의 후속 수색을 위한 여건 조성 목적이었는지 여부와 그 협의 기록을 포함한다.

47. 지형 변화 식별 지점과 폭발 지점 간 정확한 이격거리(미터 단위) 및 그 산출 근거.

48. 2026년 6월 23일 이후 대통령실에 보고된 관련 문건의 목록과 제목, 대통령의 지시사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여부 및 논의 결과. 사건 발생 시점부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발 시점까지 이루어진 보고와 지시 내역, 순방 기간 중 보고 체계 및 보고 내용, 지시 내역을 포함한다.

49.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사분계선 관리 기준, 경고사격 등 교전수칙, 전방 경계작전 지침의 변경 여부와 그 내용 및 하달 문서.

50. 2025년 9월 이후 해당 구역을 포함한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자산 운용 계획과 실제 운용 내역, 위성영상 판독 주기와 담당 부서,

판독 결과의 전파 체계.

51. 정부는 위 자료를 군사기밀 지정을 이유로 제출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 규정상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제한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책임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요구 의원실에 직접 내방하여 원본 열람과 대면 보고를 실시하며, 정보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 비공개 열람 절차를 병행한다. 국회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기밀 지정을 자료 제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제5장. 야당 및 야당추천 전문가 참여 진상조사단 및 청문회 · 국정조사

52. 국회는 정부 단독 조사로는 이 사건의 진상이 국민 앞에 온전히 규명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수사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는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한다. 정부는 조사단에 현장 접근, 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 관계자 면담을 보장한다.

53. 국회는 본 사건과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사안을 함께 다루기 위하여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긴급 연석 청문회를

즉시 개최한다.

54. 국회는 위 청문회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및 공보실장, 지상작전사령관, 제1군단장, 제25사단장, 국군수도병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방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증언 거부·허위 진술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는다.

55. 국회는 「국회법」 제122조의3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즉시 실시하여, 유엔사 팩트시트 접수 이후의 조치 경과, 대통령의 보고 수령 시점과 지시 내용, 부상 장병에 대한 조치 경과를 국민 앞에 직접 확인한다.

56. 국회는 정부가 제4장의 자료 제출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57. 국회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유엔사 팩트시트 접수 이후의 조치 경과, 현장조사 지연의 경위, 부상 장병 후송 및 치료 조치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한다.

58. 국회는 여야 동수의 현장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지역, 제 25사단 및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책임 규명·재발 방지 및 이행 점검

59. 국회는 2025년 9월 위성영상을 통하여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흔적을 식별하고도 1년 동안 추가 매설 차단, 현장 확인, 위험 고지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병을 해당 구역 작전에 투입한 지휘·정책 판단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60. 국회는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는지,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를 규명 대상으로 삼으며,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61. 정부는 지뢰 폭발 등 우발 사고 대응 매뉴얼과 현장·증거 보존 매뉴얼의 이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이번 사고에서 미이행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을 규명한다.

62. 국회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행된 작전에서 무인 장비 등 대체 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병 18명을 투입한 작전 판단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63. 정부는 지뢰 위험지역 수색로 개척에 무인 차량·지뢰탐지 로봇 등 대체 수단을 우선 적용하도록 작전 절차를 개정하고, 지뢰 방호 장구의 실효성을 전면 재점검하며, 전방 부대의 응급후송 체계와 중증외상 대응 역량을 보강한다.

64. 정부는 1차 폭발 발생 시 추가 폭발 위험을 전제로 한 구조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점검하고, 연쇄 폭발 상황에서의 구조 교리를 보완한다.

65. 정부는 최종 조사결과의 발표 시기를 명시하고 유엔사 평가 절차의 진행 상황을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국회는 유엔사 평가를 이유로 최종 발표가 무기한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66. 정부는 최종 조사결과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명되는 경우 시행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판명 즉시 이를 실행한다. 국회는 북한의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독자적 대응 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을 지적한다.

67. 국회 국방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매주 정부로부터 진행 상황과 부상 장병의 치료·보상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그 요지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68. 국회는 본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 여부를 국민 앞에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 심의를 포함한 국회의 모든 권한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제안이유

2026년 9월 21일 오전, 육군 제25사단 작전지역 내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었음. 공병 부사관 1명이 1차 폭발로 부상을 입었고, 구조를 위하여 현장에 진입한 수색대대장이 2차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작전에 투입된 장병 18명 전원이 응급후송되었음.

이번 사건은 사전에 아무런 징후가 없던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려움. 우리 군은 2025년 9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하여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지형 변화를 이미 식별

하였음. 적이 우리 관리지역에 지뢰를 묻었을 가능성을 군 스스로 확인한 것임.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매설을 차단하거나 현장을 확인하거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지금까지 없음. 군은 그 기간 유엔군사령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사이 지뢰 매설 구역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조차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위험지역에 들어간 작전에서 장병들이 다쳤음.

해당 지역의 북한군 지뢰 매설 경고는 국제기구를 통하여도 이미 전달되어 있었음. 유엔군사령부는 2026년 6월 23일자 팩트시트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첫 번째 의심 지점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나 나머지 지점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지점에 대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음. 특히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방어적 조치로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하였음. 위험은 문서로 경고되어 있었고, 위반 여부를 가릴 기준도 함께 제시되어 있었음.

유엔사의 조사는 한국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조하여 현장 접근로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유엔사가 나머지 의심 지점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군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조를 하였는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함. 합동참모본부는 9월 10일 군사분계선 이남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인 지형 변화를 식별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사고 일주일 전인 9월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유엔사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하였음. 팩트시트 발행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약 3개월 동안에도 실질적인 현장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의혹을 키웠음. 과연만 분석하여도 매설 주체를 상당 부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에도,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9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여러 방향에서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음.

첫째,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6월 23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합동참모본부도 9월 10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인위적인 지형 변화를 식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사고 지역 일대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가능성이 이미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있었다는 의미임.

둘째, 지뢰 방호 덧신을 착용한 상태에서 우리 군 M14 대인지뢰에 의하여 발목이 절단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군 안팎의 일반적인 설명임. 이번 피해가 절단상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폭발물의 종류를 좁히는 단

서임.

셋째, 합동참모본부가 9월 28일 발표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이고,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과는 10여 미터 떨어져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되었고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으며, 1차 폭발 지점 약 1미터 인근에서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태의 갈색 목재 계열 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음. 폭발한 2발 외에 철수 과정에서 1발이 추가로 발견되어 원점 일대에만 3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는 우리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한 지점에 세 발이 모여 있는 상황은 빗물에 떠내려온 유실 지뢰로는 설명되기 어려움.

넷째, 사고 현장에 있던 인원들 중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를 목격하였다는 복수의 증언이 전해지고 있음.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합동참모본부도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난 9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통하여 뒤늦게 북한군 매설 지뢰 가능성이 높다는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음.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이 걸린 이유임.

지형 변화 지역의 존재와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의 부존재는 사고 이전부터 군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임. 그 사이 정부는 '미상의 폭발'이라는 설명을 유지하였고, 국민과 국회의 질의에 사실상 답하지 않았음.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언제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확보된 시점과 발표 시점 사이에 어떤 검토와 결재가 있었는지가 규명되어야 함.

특히 최초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 있던 '북한 (목함) 지뢰 추정'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사고 직후 현장 지휘계선이 북한군 지뢰로 판단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일주일 뒤 같은 결론이 공식 발표되기까지 그 판단이 어디에서 멈추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함. 정부는 이 의혹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음.

대통령의 대응 또한 납득하기 어려움. DMZ 지뢰폭발 장병피해 사건은 9월 21일 오전에 발생하였으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짧은 위로 글을 올린 뒤 같은 날 오후 해외 순방길에 올랐음. 이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우리 장병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매설 추정 지뢰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음. 군 통수권자가 국제사회 앞에서 북한제재 완화,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면서, 바로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은 자국 장병에 대하여는 한 문장도 말하지 않은 것임. 국군통수권자가 장병의 피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남은 장병들이 국가를 어떻게

신뢰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임. 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순방 출발 시점까지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가안전 보장회의가 소집되었는지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또한 사건 직후인 9월 21일과 22일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출입, 임무 수행 영상 공유, 작전 참여자 면담을 포함한 신속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우리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은 중대한 문제임. 그 결정이 어느 선에서, 어떤 사유로 내려졌는지 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그사이 사고 현장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9월 27일에야 이루어진 한·유엔사 합동조사에서도 조사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지뢰 사고의 원인 규명은 현장에 남은 파편과 폭발 흔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현장이 훼손된 뒤에 시작하는 조사로는 매설 주체는 물론 폭발의 경위조차 확정하기 어려우며, 결국 조사를 하고도 밝히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음. 조사의 지연이 그 자체로 진상규명의 실패를 낳을 수 있는 사안임.

아울러 사고 전후 관련 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통제와 함구령 등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작전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와, 사고 경위에 관한 증언과 기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

조사의 지연은 부상 장병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돌아감. 적대 행위로 인한 부상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전상 처리와 그에 따른 예우·보상 절차도 함께 미루어지기 때문임. 부상자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발표된 것 역시 단순한 집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퇴원자를 포함한 다수 장병의 상이 구분과 보상이 걸린 문제임.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 제대의 상황일지, 보고서 원본과 기안문 초안, 보고서상 표현의 수정·삭제 이력, 유엔사와 주고받은 공문, 바디캠 및 감시장비 영상, 수거 증거물 목록과 감식 경과, 사고 대응 매뉴얼의 이행 기록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태도는 그 자체로 축소·은폐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일이기도 함.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함.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임.

이에 국회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 증거보전, 2025년 9월 지뢰 매설 식별 이후의 조치 및 유엔군사령부 협의 경과 규명 등

자료 제출, 야당 및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를 명시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2.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9월 21일 육군 제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2015년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에 의한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우리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

이번 사건이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정전협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북한군 지뢰의 종류와 출처, 우리 지역에 존재하게 된 경위와 매설·유입 시점 및 과정,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은 우리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와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단호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북한당국이 이번 지뢰 폭발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북한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함과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북한의 향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DMZ 일대에 대한 면밀한 지뢰 탐지·점검과 장병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

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유엔군사령부 및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북한의 재발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부상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보훈·의료 및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21일 육군 제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함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2015년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로 인한 장병 피해가 발생한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

로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히려는 것임.

아울러 북한군이 우리 지역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정전협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하고, 지뢰의 종류와 출처, 매설·유입 경위 및 시점,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한민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단호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Ⅲ. 검토의견

1. 발의배경

- 지난 9월 21일 오전 10시 51분경 육군 제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우리 군이 유엔사 현장조사 지원 목적의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 폭발이 발생하여 장병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작전에는 간부 15명과 병사 3명 등 총 18명이 투입되었으며, 폭발로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함.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은 사고 직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여 합동조사를 추진하였고, 9월 27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함. 9월 28일 합참은 중간조사 결과, 폭발 지점이 MDL 남쪽 약 10m 지점이며, 해당 지역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 또한 폭발 당시 장병들의 장구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의 이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폭발 형태와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참가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군 지뢰가 아닌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함.

<합참 중간평가('26.9.29.)>

- ①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인근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9. 발견
- ② 국과수 1차 감정결과 고려 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재 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점,
- ③ 1차 폭발지점 약 1m 인근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한 점,
- ④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화염 형태, 피해장병의 부상정도, 작전인원의 진술 등을 고려시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

□ 이어 9월 29일 실시된 3차 현장조사에서는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합참은 해당 지뢰가 사고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지뢰인 것으로 평가하고, 해당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폭발 지뢰 2발과 장병들이 발견했다고 진술한 지뢰 1발, 현장조사에서 추가 발견된 지뢰 1발 등을 포함하여 사고 현장 일대에는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합참은 9월 30일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북한군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에 대해 군사분계선 인근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합참은 이러한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힘.

- 합참은 10월 5일에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북한이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함.

2. 결의안별 검토

□ 나경원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임.

2026년 9월 21일 육군 제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 중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전부터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의심되는 지형 변화가 식별되고 유엔군사령부도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나 위험 제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한, 사고 이후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대한 공식 판단이 늦어졌고, 최초 보고서의 ‘북한 지뢰 추정’ 표현 삭제 의혹과 함께 사고 관련 보고·지시 및 유엔사 조사 협조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유엔사의 신속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과 현장조사가 지연되면서 증거 훼손 및 진상규명 차질 우려가 제기되었고, 장병 휴대전화 통제·함구령, 부상자 수 변경, 전상 처리 및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지뢰의 매설·유입 경위 및 관련 조치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전후 모든 보고·기록과 유

엔사 협의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증거보전을 요구하는 한편,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진상조사 및 청문·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함.

□ 동 결의안은 총 6개의 장과 68개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에서 제기하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① 사고 직후 작성된 최초 군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목함지뢰 추정’ 문구의 삭제 의혹, ② 사고 다음 날 북한 지뢰 관련 장병 진술을 확보하고도 공식 발표가 지연된 점, ③ 사고 발생 후 합동 현장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점, ④ 북한 지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초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제기하고 있음.

구분	주요내용
제1장. 부상 장병 국가 책임	국가 책임 원칙 확립 및 치료·재활·보상·예우 전 과정에서 장병·가족의 절차적 부담 최소화
	사고 후송 장병 전원에 대한 상이 구분 절차 실시 및 부상 경증과 관계없이 적정한 예우·처우 보장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 존중 및 계속 복무 여건 보장, 전역시 보훈·재활·취업·생활지원 연계 등
제2장. 증거보전· 자료 훼손 금지	사건 관련 영상·사진·상황일지·보고문건·공문 등 자료의 폐기·삭제·편집·재분류 금지 및 기존 훼손 자료의 내역 보고·원상복구
	회수된 폭발물 파편·잔해의 목록·보관현황 제출 및 국과수·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차 감정 실시
	휴대전화 사용·SNS 게시·함구령 등 보안통제의 근거·범위 공개 및 과도한 통제로 인한 증언·기록 보전 저해 방지 등

제3장. 25. 9. 지뢰 매설 식별 이후 조치 및 유엔사 협의 경과 규명	2025년 9월 최초 식별 이후 사고일까지의 정부 조치 전모 공개 및 미조치 사항 명시
	사고 직후 유엔사의 현장조사 요구 접수·보고·의사결정 경위 및 즉시 조사 미실시 사유 규명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으로 유엔사에 공식 회부하고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요청 등
제4장. 25. 9. 북한지뢰매설 식별 이후 조치 경과 등 자료 제출 요구	- 사전 인지·보고자료 - 사고 당시 지휘·보고 및 보안통제 - 현장조사·증거보전 자료 - 폭발 원인·지뢰 종류 규명자료 - 대통령실 보고 및 전방작전·감시체계 자료 등
제5장. 전문가 참여 진상조사단 및 청문회·국정조사	야당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 및 현장 접근·자료 열람·관계자 면담 보장
	본 사건 및 북한 포로 송환 문제 관련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긴급 연석청문회 개최
	유엔사 팩트시트 이후 조치, 현장조사 지연, 장병 후송·치료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제6장. 책임 규명·재발 방지 및 이행 점검	2025년 최초 식별 이후 미조치 및 장병 투입에 대한 지휘·정책 판단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인사·법적 책임 검토
	무인장비 우선 적용 등 작전절차 개선, 지뢰 방호장구 재점검 및 응급후송·중증외상 대응능력 강화
	조사 종료까지 매주 진상조사 및 부상 장병 치료·보상 진행상황 국회 보고·공개 등

□ 동 결의안은 이번 사고가 우리 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중·경상을 입은 사안으로, 사고 원인과 지뢰의 매설·유입 경위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 위험요인의 식별 및 조치, 작전계획과 병력 투입의 적정성, 사고 발생 이후 상황보고와 현장조사 등 군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2025년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형 변화가 식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보고되고, 위험 고지·출입 통제·지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고,

또한, 사고 이후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관한 최초 판단 및 보고 내용의 변경 여부, 부상자 규모 발표의 변동 경위,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 요청과 우리 군의 대응, 현장조사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실시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보고절차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임.

□ 아울러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의 정확한 보존과 검증이 필요함과 동시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등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동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지뢰 위험지역에서의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임.

□ 동 결의안은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합참 등을 비롯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이나 전제하에, 정부 조사와 별도로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차원의 조사 과정 등이 필요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리 장병 및 가족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 **진성준의원 외 160인이 발의한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임.

지난 9월 21일 DMZ 내 MDL 남쪽에서 수색로 개척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2015년 지뢰도발 이후 10년 만에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힘.

북한군 지뢰의 종류·출처와 매설·유입 경위 및 시점,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북한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함.

- **동 결의안**은 모두 5개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북한당국이 이번 지뢰 폭발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북한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을 인정하고 사과함과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북한의 향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DMZ 일대에 대한 면밀한 지뢰 탐지·점검과 장병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유엔군사령부 및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북한의 재발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부상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보훈·의료 및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규탄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주문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은 우리 군 장병들이 군사분계선 인접 DMZ에서 정상적인 작전 수행 중 지뢰 폭발로 인하여 중·경상을 입은 사안으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특히 2015년 DMZ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이후 10년 만에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DMZ 일대에서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에 명확한 경고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지뢰폭발사고의 사실관계 규명, 책임 인정 및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북한당국에 촉구하는 것은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취지로 보임.

-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DMZ 일대 장병 안전대책 마련 촉구(주문 제3호)와 관련하여,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DMZ 일대의 지뢰 및 폭발물 위험에 대한 탐지·점검과 작전지역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북한의 도발 억제 촉구(주문 제4호), 부상 장병과 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및 후속 지원대책 마련 촉구(주문 제5호)와 관련하여,

DMZ는 정전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유엔군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건의 조사 및 대응책이나 재발방지 및 도발 억지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상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개인별 필요에 맞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나경원의원 발의 결의안과 진성준의원 발의 결의안은 모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우리 국군 장병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배경으로 발의 되었으며,

두 결의안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지뢰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병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 지원을 비롯하여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게 유엔군사령부를 비롯하여 국제적 공조관계를 강화하여 이번 북한군의 지뢰매설행위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북한의 재발방지 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합참을 중심으로 지뢰폭발 상황 직후부터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조사 협의 등을 통해 현장조사 TF를 구성하는 등 정확하고 투명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DMZ의 특수한 작전환경(MDL 근접, 다수 지뢰 산재, 우거진 식생 등)과 장병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 및 유엔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하고 투명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지뢰

폭발 상황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 발표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8